##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8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1.

발 의 자: 주호영・김태흠・金炳旭

이 용・김형동・곽상도

김희곤 • 유의동 • 이종배

류성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를 도입하고,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영업허가에 대하여 사업장 등 구체적 단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, 특정 법인 본점이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별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, 이 와 관련해서 법제처도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(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###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전에"를 "사업장마다 사전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업종별로"를 "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 업 구분에 따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)	제28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)
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	①
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<u>사전에</u> 다음 각 호	<u>사업장마다 사전에</u>
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	②
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	
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	
취급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	
갖추어 <u>업종별로</u> 환경부장관의	<u>사업장마다 제27</u> 조 각 호
허가를 받아야 한다.	의 영업 구분에 따라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